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된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소통의 활성화와 구민 참여 프로그램 제작 등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스튜디오 시설을 규정(안 제3조)

- 스튜디오 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안 제5조)
- 사용허가 제외,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 시대를 맞아 영등포구에 스튜디오(『스튜디오 티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총12개의 조문과 부칙, 별지 4종, 별표 1개로 이루어져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스튜디오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구민이나 구에 소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스튜디오 사용 허가 등 사업에 대하여 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스튜디오의 사용 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 제외, 허가 취소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음. 다만 안 제8조제2항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로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9조는 사용시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1층에 구정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1인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인력 및 청사 보안, 예산 수반사항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7 호
----------	---------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최초로 조성된 스튜디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소통의 활성화와 구민 참여 프로그램 제작 등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스튜디오 시설을 규정(안 제3조)
- 다. 스튜디오 사업을 규정(안 제4조)
- 라.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안 제5조)
- 마. 사용허가 제외,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바.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사. 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아.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20. 9. 24.(목) ~ 10. 14.(수)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영등포구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설치한 영상 관련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상실: 영상 촬영 및 녹음
2. 조정실: 영상 촬영 감독, 편집 등
3. 기타 공간: 장비 및 영상자료 보관 등

제4조(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및 영등포구에 소재하거나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 등(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날 접수된 신청의 사용시간이 중복된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미사용자를 우선한다.

④ 스튜디오 사용허가의 범위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⑤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구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사용 중인 경우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구민 등(이하 “사용

자”라 한다)은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등) ① 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을 기준으로 하고 1회 4시간으로 한정하되, 영등포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예정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영등포구: 면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전액감면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액감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전액감면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전액감면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전액감면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			
구 분	☐ 영상실 ☐ 조정실		
성명 (기관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계획	1. 행 사 명 : 2. 행사내용 : 3. 예상이용자 :		
담 당 자	(인)		

※ 미성년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스튜디오 이용 주의사항

- 시설물 사용 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용목적과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용하실 분이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반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시설,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 확인
2. 제공받는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 성 년 자 성 명		법 정 대 리 인 성 명	
법 정 대 리 인 생 년 월 일			
법 정 대 리 인 연 락 처			
법 정 대 리 인 주 소			

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설 및 장비 사용 간에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서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인)

☐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사용에 따른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2. 제공받는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미성년자 성명,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주소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스튜디오 시설사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서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10 -

[별지 제3호서식]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원	거래은행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성 명		
반환신청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사용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 용 료	금 원정 (₩)			
감면률(액)	% [금 원정 (₩)]			
실제사용료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감면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별표 1]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료(제10조 관련)

○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기본시간	비고
영상실	30,000	1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000원 (무대, 조명, LED, 프롬프터)
조정실	20,000	1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20,000원 (오디오 및 녹화, 스트리밍 장비)

※ 기타사항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촬영 장비는 개인(단체)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촬영 장비 준비가 어려운 경우 핸디캠 1set를 요청할 수 있다.
- 스튜디오에 설치된 모든 장비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